

고령층의 연령기준과 노인시설 및 주거 A Housing and Facilities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이 민 아*

군산대학교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Min-Ah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I. 고령인구 증가와 노인시설 및 주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16년 현재 14%에 근접해 가면서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초과한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고령인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빨라 2050년에 일본에 이어 고령인구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이슈는 바로 사망률에 비해 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계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2015). 이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주거와 시설

획 및 디자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 주거는 단지 기거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둘러싼 맥락의 문제로서 작게는 가족과 자녀의 문제, 즉 적은 자녀수로 인해 가족이 노인을 케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며 바로 사회가 노인부양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크게는 물가변동 등과 같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 재개발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물리적 상황에 관련된다.

고령인구의 증가가 노인시설 및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최근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¹⁾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펼쳐지면서

*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주거 및 실내계획전공 이민아 교수
(e-mail: leema@kunsan.ac.kr)

1) “aging in place”는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하던 지역과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은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노인양로시설보다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후의 질적인 삶을 담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베이비부머가 노인단계로 접어들면서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원스톱 실버타운과 소규모 단위주택에 10명 내외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식의 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웰다잉을 위한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노인주거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자녀가 아닌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비혈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코하우징이나 새어하우스²⁾ 유형의 주거가 각광을 받게 되고 최근 지인들과 함께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건립하는 협동조합주택³⁾도 등장하

고 있다. 또한 은퇴 후 귀촌이나 귀농을 하면서 전원생활 및 농촌생활에 적합한 은퇴 후 전원주택, 농가주택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수도권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했다.

넷째,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를 임대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하고(난방비, 임대료, 개조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여 건립되는 각종 주택에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바로 빈곤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본다.

II. 노인의 연령기준과 주거

지난 2015년 5월 25일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조정 동의 및 공론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어디에도 정의된 것은 없지만, 국내의 연금수령 정책 및 각종 사회편의 혜택이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 왔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사회 각층에서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논

주거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재가생활”이나 “재가노후”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미 일반적인 노인 정책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2) 코하우징(co-housing)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있고 단지나 건물 내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예: 공동식당 및 부엌)을 배치한 주거형태로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새어하우스(share house)는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으면서 주방이나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의미함.
- 3) 협동조합주택은 분양 전 입주민을 모집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세대별로 토지매입 및

주택설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주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주택 착공부터 입주민들이 참여하며, 입주 후 커뮤니티 형성 및 관리까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의되어 온 시점에서 대한노인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천거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보편, 먼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시설비용의 전액부담을 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가능하다. 즉,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경우 65세 이상의 일정 수의 노인이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입소를 희망할 경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시설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다.

반면, 일반주거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겨울철 난방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산업통상자원부, 2015), 그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즉 중위소득 40%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6세 이하의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서 노인의 연령기준이 상향될 경우 상당수의 노인 포함가구가 동절기 난방에 곤란을 겪게 된다. 또한 이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노후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싼 석유나 전기를 사용하여 겨울을 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 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무주택 세

대주이면서 소득이 평균소득의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될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준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노인 혹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노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국토교통부, 2015). 주거비용은 크게 주거임대료와 주거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수가 제외되어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⁵⁾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환(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노인만 포함되며, 일반 장애인노인은 제외되고 있다. 즉, 노인연령이 상향될 경우, 적절한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은 장기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재가서비스 뿐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물론 국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노인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당수의 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유료시설을 선택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노인주거 및 시설과 관련하여 노인연령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4)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일부개정

기준 상향조정은 신체적으로 독립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관건은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빈곤노인 및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공공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계층 간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인권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빈곤과 질병, 주거취약 상황의 악순환 속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조정은 이들을 더욱 절대빈곤과 질병의 악화, 주거관리의 불가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노인주거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은 절대 빈곤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노인들에게 흔히 있는 관절염이나 시력 및 청력 등 다양한 감각의 쇠퇴 등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처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단순히 국내의 평균수명 차원에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빈곤노인의 상당수는 신체적 보행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터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으로 규정하는 시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 개인의 노화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낮아지면서 만들어진 평균수명의 증가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손실이 심각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이나 모든 복지혜택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상황(예: 취업상황이나 자산 등)

을 보다 엄밀히 조사하고 각종 혜택과 제도의 성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노후의 준비는 일상생활을 담는 주거에서 시작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상향조정된 연령을 기준으로 다른 사회적 혜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지원을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계층을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 현 젊은 세대가 노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사회로부터 지원 및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바우처사업, 23,000여 에너지공급사가 함께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보도자료, 2015. 10. 27.)
- 국토교통부 (2015).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보도자료, 2015. 09. 21.)
- 통계청 (2015).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15. 07. 08.)

원고접수일: 2016. 09. 09.
수정원고접수일: 2016. 09. 18.
원고게재승인일: 2016. 10. 13.